

학부모위원(보궐) 입후보자 등록서				
성 명		생년월일		사 진 (3×4)
주 소				
등록기준지				
전 화		H.P		
학생성명	학년 반 성명			
자격확인	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
	②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
	③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
경 력	사회경력,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		직 업	
입후보 소 견	<p>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1기 산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(보궐선출)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후보자 성 명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산내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

※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04의7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
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(임의서식)하며, 결
격사유조회 회신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